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8회 정례회 2016. 6. 23.(목)

# 심사보고서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401호 2016. 6. 23.(목)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임병운 의원 등 7명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6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2016년 6월 8일

-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운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충북 도내 사할린 한인 현황: 241명(청주 70, 제천 108, 음성 63)

## 나.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나.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다.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 장례 지원, 사할린 현지 가족과의 만남을 위한 항공료 지원 등
- 라.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함 (안 제9조)
- 마.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0조)

#### 다. 참고사항

- 비용추계 : 붙임
- 기 타 : 입법예고(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28호)결과, 제출의견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

###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충북에 정착한 영주 귀국사할린한인 주민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할린한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다, 1992년부터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영주귀국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3,035명이체류하고 있으며, 우리 충북은 청주, 제천, 음성 지역에 241명이 계심.
- 정부에서는 1996년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할린에 남은 가족과의 이상 등 비인도적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 귀국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 됨.

-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과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 안 제5조는, 매년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는, "201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를 준용하여 지원 대상범위를 영주귀국주민 1세, 1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으로 규정하되,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1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한국에서 만 1년을 거주해야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 례안에서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충북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충북에 거주하는 영주귀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이를 수 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히, 지난 해 정책복지위원회 임병운, 최병윤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의원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사업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비·시군비 지원을 위한 연간 비용추계를 작성함.

#### ※ 비용추계(年)

- 1)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 20,000천원
- 2)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사업 : 64,000천원

- 안 제9조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충북에 정착한 241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고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도 담당 부서(노인장애인 과)와의 혐의 절차를 거쳐 마련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실태 기본현황 (2015년)

구분	시군	주 요 내 용			
기본현황	합계	• 241명(남 104, 여 137)			
	청주	• 70명(남 27, 여 43) / 오송읍 휴먼시아 / '08년 입주			
	제천	• 108명(남 48, 여 60) / 영천동 휴먼시아 / '10년 입주			
	음성	• 63명(남 29, 여 34) / 음성읍 휴먼시아 / '09년 입주			
지원현황	공통	<ul> <li>특별생계비: 1인가구 월 75천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li> <li>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li> <li>1인가구(월 499,288원), 2인가구(월 850,140원)</li> <li>장제급여: 사망시 750천원 (가족, 대리인등에 지급)</li> <li>의료급여: 병원 진료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 감면・할인</li> <li>최초입국시</li> <li>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지원</li> <li>항공료 (1회 / 실비), 집기비품 (1회 / 1,400천원)</li> <li>※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차감 지급</li> <li>現 지원금액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 가능</li> </ul>			
	공통	- 아파트 제공으로 기본적인 거주여건 해결			
	청주	• 교통 여건 양호 (대중교통 이용 편리)			
교통	제천	• 교통 여건 양호 (대중교통 이용 편리)			
亚名	음성	• 교통 여건 열악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등 이용 불편) - 전용 콜택시(원거리 이동시 할인) 희망			
	청주	<ul> <li>하나병원과 자매결연, 비용부담 및 병원이용 어려움 없음</li> <li>기본항목 무료진료, 병원 차량제공 등 혜택</li> <li>수술·장기간 입원등 고비용 부담 발생시 병원측에서 무료 혜택 제공</li> <li>긴급복지지원제도(300만원×2회) 도움</li> </ul>			
의료환경	제천	• 근거리 병원 소재, 이용에 큰 불편 없음 - 제천서울병원(2km), 명지병원(6km)			
	음성	<ul> <li>지역내 의료인프라 열악, 타지역 병원 이용</li> <li>청주성모병원, 충주건대병원</li> <li>교통불편, 언어소통등 병원 이용에 어려움</li> <li>병원정보 및 이용절차등 정보습득·이해에 한계</li> </ul>			

구분	시군	주 요 내 용					
거주여건 (아파트)	공통	• 아파트 시설 만족, 거주여건 양호 - 월 평균 아파트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등 포함) 8~10만원 - 기초수급자 감면혜택으로 관리비 부담 적음					
근로(취업)	공통	<ul> <li>근로활동(취업) 중인 어르신 없음</li> <li>취업에 따른 소득발생시 기초생활보장급여 차감 우려</li> <li>※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 (음성)</li> <li>- 現 지원수준에 만족, 취업 미희망 (일부)</li> </ul>					
여가·문화	청주	•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근거리 위치 (1.5km) -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봉사활동(도시락만들기) 참여 - 봉사활동(도시락 만들기), 단체 영화관람, 칠순팔순 잔치 등 • 읍사무소 주민프로그램 이용(한글, 노래 등)					
	제천	• 명락노인복지관 이용 (1.5km, 한국어·노래교실등) • 적십자 봉사회 연 1회 여행 주선 • 더위에 취약, 입주민의 80%정도가 여름에는 러시아 에서 생활 (3개월 정도) ※항공료 : 왕복 800달러(88만원)					
	음성	•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문화생활의 여건등 기회 부족 • 노인복지관(금왕, 14km) 원거리 소재, 이용 어려움 • 교통불편, 정보취약, 언어소통등 문제로 국내여행에 어려움					
장례	청주	• 청주의료원 이용 : 시설이용료(50~60만원) - 식대 : 지역주민(공동체생활)이 직접 음식 마련·제공					
	제천	• 제천장례식장 협약 : 시설이용료(75만원) - 식대 :100만원 정도 소요 (자체모금, 자녀부담)					
	음성	• 농협장례식장 협약 : 시설이용료(97만원), 식대(자부담)					
애로 및 건의사항		<ul> <li>현재 생활수준 만족, 건의사항 없음 (청주)</li> <li>목돈마련 어려움, 긴급사안 발생시 비용 부담 (제천)</li> <li>지역내 의료, 문화·여가, 교통 인프라 개선 희망(음성)</li> <li>영상통화 활용으로 국제전화 비용부담은 없지만 어버이날, 명절등 가족 그리움이 큼(음성)</li> <li>가족 방문을 위한 항공료 비용 부담</li> <li>언어, 정보, 관공서 이용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움 필요(음성)</li> </ul>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 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방향
  -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 3. 관련 단체 ·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영주귀국주민 1세
  -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 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
  -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
  -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사업

-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
-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 6.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
- 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
- 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
-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 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하다)를 둔다.

-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 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 결정에 관한 사항
-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 2. 비용 발생 요인

○ 영주귀국주민 장례비 추가 지원 및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3. 관련조문

○ 가칭)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식비) 및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나. 추계 결과 (年)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 : 20,000천원
  -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64,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영주귀국주민 장례지원 사업 : 도비 20%, 시군비 80%
  - 영주귀국주민 사할린 방문 항공료 지원 : 도비 20%, 시군비 8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김 성 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À	네 입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국 비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도 비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시군비	67,200	67,200	67,200	67,200	67,200	336,000
세 출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특별생계비		216,900	216,900	216,900	216,900	216,900	1,084,500
생	계·주거급여	1,224,202	1,224,202	1,224,202	1,224,202	1,224,202	6,121,010
	장례지원(식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사할	린방문지원	64,000	64,000	64,000	64,000	64,000	320,000
;	재원 조달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1,525,102	7,625,510
의	소 계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존 재	보조금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1,441,102	7,205,510
원	지방교부세	-	-	-	-	-	-
자	소 계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체   수	지방세	16,800	16,800	16,800	16,800	16,800	84,000
입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_	-	_	-	_	-
시・군비		67,200	67,200	67,200	67,200	67,200	336,000
(민	기 타 간 자부담)	-	-	-	-	-	-